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. 10. 28 선고 2020가단3968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
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민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병규, 이성철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9. 30.

판 결 선 고 2021. 10. 28.

주 문

1. 진주시 D 답 2,751㎡에 관하여,

가. 피고 C은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1998. 1. 12. 접수 제1191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

나. 피고 B는 원고에게 1996. 9. 15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1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)

나. 피고 2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 (자백간주)

판사 박성만

별지